종 합 감 사 결 과
【 2016년 군서면 】

영 암 군
(기획감사실)

군서면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부분 시정·개선토록 하여 군민 불편 해소

○ 수입, 지출,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만하고 낭비적인 재정운영 관행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절감 유도

○ 복지대상 관리 및 자원배분 실태 점검으로 중복·누락·편중 지원을 방지하여 역차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군민행복 실현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군 서 면

○ 감사기간 : 2016. 4. 26 ~ 2016. 4. 29(4일간)

○ 대상기간 : 2014. 3. 18 ~ 2016. 4. 25(2개년)

○ 감 사 자 : 기획감사실장 외 6인

3. 감사중점사항

○ 공사·구매 계약체결 및 대가 지급의 적정성

○ 기획, 총무행정, 문화 관광 등 일반행정 추진사항

○ 농정업무, 지역경제업무 및 산불예방 대책 추진사항

○ 복지행정 추진실태 및 관리의 적정성

○ 소규모사업 및 각종 공사 시공의 적정성 여부

○ 생활민원 및 각종 민원처리 실태 확인

○ 각종 세금 과세자료 누락여부 확인 등

Ⅱ.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천원)

합 계			행 정 상			재 정 상			신 분 상		
총건수	재정상 조 치	신분상 조 치	계	시정	주의	소계	추징	회수	소계	훈계	주의
16	15,378	17	16	6	10	15,378	14,034	1,344	17	-	17

2. 분야별 위법·부당한 사항

가. 기획·일반행정 및 민원분야

○ 비밀문서 관리 소홀

○ 이륜차 관련 민원사무처리 부적정 : 추징 72,000원

○ 봄철 휴일(설명절 연휴기간) 산불 비상근무 소홀

나. 세출분야

○ 이장 월정수당 지급일 지연

○ 유류카드 이용대금 결재계좌 입금조치 소홀

○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따른 급식비 집행 부적정 : 회수 1,261,000원

다. 세무분야

○ 취득세(건축물,이륜차)과세자료 누락 : 추징 8,800,270원

○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관리 소홀 : 추징 5,161,800원

라. 사회복지·환경분야

○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절차 소홀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에 대한 구비서류 과다 징구

마. 농업·지역경제·산림분야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발급 소홀

○ 농지임대차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바. 건설·도시분야

○ 건설폐기물처리 부적정

○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사전승인 소홀

○ 군서 성양리 농로 포장공사비 과다집행 : 회수 83,000원

3. 주요위반사항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기획·민원 일반행정·분 야	비밀문서 관리 소홀	● Ⅲ급 비밀 11건 중 4건은 예고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파기하지 않고 Ⅲ급 비밀 문서철에 보관하고 있으며, Ⅲ급 비밀문서 11건 중 3건은 비밀문서 관리자의 인사이동으로 비밀문서를 인계·인수하였음에도 비밀열람기록전에 열람사항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비밀문서가 배부 되었음에도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하지 않고 Ⅲ급 비밀문서철에 보관하고 있어 비밀문서의 기록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45조, 영암군 보안업무처리 규정】
	이륜차 관련 민원 사무 처리 부적정	● 총 255건의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서 및 사용폐지신고서,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서 등의 민원서류를 민원사무 처리부에 접수(기록)하지 않고 민원처리부서(산업건설팀)에서 이륜차 업무담당자가 접수하여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일반문서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처리한 총 24건(72,000원)에 대하여 수입인지를 소화하지 않았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8조】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기획·민원 일반행정· 분 야	민방위대 자원관리 부적정	● 2015. 1. 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편성의무자원 346명중 제외자원 222명(당연제외 218, 주민등록말소자 4)을 제외하고 124명(신규 5, 기존 119)을 2015년도 민방위대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민방위대 편성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으며, 또한 신규 편성 민방위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를 알리지 않았음. 【지방재정법」 제6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봄철 휴일(설명절) 산불비상근무 소홀	● 산불방지대책 운영계획을 수립(군서면-1406/ '16.2.2) 산불비상근무조를 편성(2인1조) 하고 설 명절(2.6~2.10) 기간중 산불 비상근무 명령하여 근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나 비상근무 하지 않고 재택근무로 대체함으로 산불비상 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 제7조】
세출분야	이장수당 지급일 지연	● 2014. 3월 ~ 2016. 4월까지 총 16회에 거쳐 이장 월정수당 지급을 1일~7일까지 지연 지급하여 지출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영암군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
	유류카드 이용대금 계좌입금 조치 소홀	● 행정차량 및 청소차량에 대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면서 유류비를 2015년 10건(1일~4일 지연), 2016년 4건(1일~8일)을 늦게 결재 계좌에 입금하는 등 지출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9호 2015.1.22.)】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따른 급식비 집행 부적정	● 산불발생시 진화대원이 출동하여 진화작업에 투입할 시 집행하여야 할 급식비를 산불발생 및 출동근거 없이 2014년 1,001천원, 2015년 260천원을 지급하여 산불예방관리 예산 1,261천원을 낭비하였음 【산림축산과-2323(2014.1.27.),산림축산과-3679(2015.2.6.)】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세무분야	취득세 (건축물, 이륜차) 과세자료 누락	●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취득세 과세자료를 군에 제출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취득세 17건 8,800,270원이 누락된 사실이 있음. 【지방세법 제20조】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관리 소홀	● 영암군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읍면에서는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미신고 납부한 6개 사업장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주민세(재산분) 11건 5,161,800원이 누락되어 과세대상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음. 【재무과-16221(2013.7.3)호, 재무과-17007(2014.7.3)】
사회복지 분야	의사무능(미약)자 급여관리 절차 소홀	● 2014년 5가구, 2015년 6가구에 대한 상·하반기 급여관리 점검 시 대상 가구에 대한 현장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급여 관리자가 제출한 명세서만을 근거로 하여 급여 관리 점검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에 대한 구비서류 과다 징구	● 2015년부터 2016년 4월 현재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14가구에 대하여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으로 구비가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신청 가구별로 직접 발급받도록 과다 징구한 사실이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농업분야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발급 소홀	●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서 접수 시 취득대상지가 농업경영인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취득면적 1천제곱미터 (413.90㎡)이하 농지에 대하여 주말·체험영농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농업경영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농업분야	농지임대차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 농지 임대차 계약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1996.1.1.이후 취득한 농지는 임대 할 수 없음에도 2014년 5건, 12,182㎡, 2015년 3건,7,564㎡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농지임대차 계약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농지법 제23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24조 】
건설도시 분 야	건설폐기물 처리 부적정	● 군서 검주리 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동호, 성양리 농로보수공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폐콘 및 아스콘) 36.55톤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및 처리확인을 하지 않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사전승인 소홀	● 군서 서구림 농로 포장공사 외 11개 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전승인 없이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 1인을 2개 현장에 중복 배치하는 등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군서 성양리 농로포장공사비 과다 집행	● 군서 성양리 농로 포장공사를 추진 하면서 본 설계 내역에 코아 채취 1조(3공)를 반영하였으나 미시공한 채로 준공처리 되었으며, 공사감독은 준공 전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 계약금액대로 집행하여 제잡비를 포함한 총 금액 83천원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 하였음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공사감독업무지침 16조 및 32조】